

의안번호	2212996
의 퇴 인	김선민의원
회 답 일	2025.11.17.
추계번호	25C5019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조의2 (비대면진료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12항) 1. 제4항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 2. 표준지침의 개발 및 비대면진료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	재량규정
2	안 제34조의3 (비대면진료 중개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제공하는 기능의 적정성 및 우수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4조의2 (비대면진료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4조의3 (비대면진료 중개)	

2. 상세 사유

□ 비대면진료(안 제34조의2)·비대면진료 중개(안 제34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, 표준지침 개발 및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명문화에 따른 사업 확대 여부 및

규모를 가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미 “비대면 진료기술개발(R&D)” 사업(2025년 기준 74억원), “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” 사업(2025년 기준 45억원)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진료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
 - “비대면 진료기술개발(R&D) 사업은 5개년(2023~2027년) 연속사업으로,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개발 및 시스템 개발,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지원 방법과 규모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가정하기 어려움
- 또한,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(애플리케이션 포함)의 기능의 적정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인증할 경우, 신규 인증 지침 마련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를 가정하기 어려움
-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“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”을 작성 및 배포하였는데,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